

## 민간경비 구성요인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In about Solution for Improvement in the Private Security Sector research

이 영 오\*

#### <목 차>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방안 |
| II. 연구방법 | V. 결론 및 제언  |
| III. 결 과 |             |

#### <요 약>

범죄 현상은 가치관의 혼돈과 사회현상의 변화, 정보화, 세계화, 도시화의 역기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추세 속에서 민간경비산업 자체는 양적으로 급성장하였으나 질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민간경비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네트워크와 치안공동생산을 위한 협력과 협동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을 관련법, 경비업체, 경비협회로 나누어 이들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민간경비 구성요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의식을 조사하여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한다. 둘째,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셋째, 민간경비 구성요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을 진단한 후 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첫째, 현행 경비업법령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문제, 경비원의 배치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민간경비 관계자들의 경비업을 선택한 입직동기는 긍정적이고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경비업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크게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이유는 경쟁업체의 난립, 직업의 부정적 평가, 저소득 등으로 나타났다. 바로 무분별한 경쟁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저가 입찰, 덤핑입찰 등이 경비업계의 묵은 과제인 것이 입증되었다. 셋째, 한국경비협회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원사의 권익보호나 협회의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보통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회원사들의 협회 정책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경비업법, 민간경비구성요인, 민간경비개선방안, 민간경비, 경비협회

\* 대불대학교 경호·무도학과 강의교수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현대사회 구조의 변화는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범죄환경의 방향과 내용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야기되는 범죄와 그 피해는 날이 갈수록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납치, 암살 등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 전문화되고 나아가 조직적인 테러, 사이버범죄에 이르기까지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범죄의 현상은 가치관의 혼돈과 사회현상의 변화, 정보화, 세계화, 도시화의 역기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경비업법 등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제도가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공익성의 강조에 치중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의 중점은 첫째, 민간경비를 구성하는 세가지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민간경비 구성요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민간경비 구성요인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제 연구의 목적은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을 진단하여 어느 수준에 와있는가를 확인하고 앞으로 구성요인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민간경비 구성요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의식을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한다. 둘째,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셋째, 민간경비 구성요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의 방법

민간경비 구성요인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규명하기 위하여 문헌적 연구와 실증적 접근을 병행하여 연구하였다. 즉 본 연구는 정부, 범죄연구기관, 언론 및 민간단체의 공식자료 등을 활용하는 문헌조사(Documentary Review)방식을 이용하

였다. 그리고 국내·외 통계자료와 정책자료의 내용을 비교·분석하는 기술적 연구방법(Descriptive Research)도 채택 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범죄환경 변화와 민간경비 산업의 관계자 등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가 단순한 문헌조사(Documentary Review)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고, 또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범죄환경과 민간경비 구성요인에 대하여 설문지를 만들어 조사한 실증적 연구인 설문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하였다.

## 2.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조사기간은 0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600부였으며 미회수 되었거나 불성실하고 응답항목 누락 등으로 활용이 부적합한 165부를 제외한 총 435부의 설문지를 유효 표본으로 확정하여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지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수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여 Cronbach's  $\alpha$ 값으로 검증 하였다.

셋째, 민간경비 구성요소의 문제점과 효율성 제고방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빈도분석을 중심으로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비율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나아가 동일 항목에 대한 여러 응답자들의 견해 차이 및 적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증( $\chi^2$ -test)을 함께 실시하였다. 또한 유의수준을  $p < 0.05$ 에서 검증하였다.

##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표 2-1>과 같다.

<표 2-1>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 류	대상자	빈 도	백분율(%)
조사대상	전문가(경찰관, 민간경비관계자)	217	49.9
	비전문가(일반시민)	218	50.1
성별	남성	323	74.3
	여성	112	25.7
연령	20대	208	47.8
	30대	132	30.3
	40대	67	15.4
	50대 이상	28	6.5
학력	중학교	3	0.7
	고등학교	83	19.1
	전문대학 재학, 졸업	63	14.5
	대학교 재학, 졸업	255	58.6
	대학원 이상	31	7.1

조사대상자를 전문가(경찰관, 민간경비종사자), 비전문가(일반시민)로 구분하였다. 전체 435명 중 전문가(경찰관, 민간경비종사자)는 49.9%인 217명, 비전문가(일반시민)는 50.1%인 218명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전체 435명 중 323(74.3%)이 남성이었으며, 112명(25.7%)이 여성이었다. 연령의 경우 435명 중 20대, 208명(47.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0대, 132명(30.3%), 40대, 67명(15.4%), 50대, 28명(6.5%)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435명 중 대학교 졸업이 255명(58.6%), 고등학교 졸업이 83명(19.1%),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 63명(14.5%), 대학원 졸업 이상이 31명( 7.1%)로 나타났다.

#### 4. 설문지의 신뢰도

이 연구에서는 <표2-2>와 같이 민간경비 관련 개선 방안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첫째, 법·제도적 체제 신뢰도계수는 0.77, 둘째, 민간경비 관련 활동의 효율성의 신뢰도 계수는 0.82, 셋째, 경비협회의 관한 평가 0.75는 전체적으로 설문지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2> 민간경비 구성요인 개선 및 방안에 대한 신뢰도 검증

세분화요인	Cronbach' Alpha
법·제도적 체제	0.77
민간경비업체 관련 활동	0.82
경비협회에 관한 평가	0.75

### III. 결 과

#### 1. 민간경비 관련법에 대한 평가 분석

민간경비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민간 경비 산업은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46호로 제정·공포된 용역경비업 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1999년 제7차 법 개정으로 용역경비업법은 경비업법으로 법명을 바꾸었고, 각종규제를 완화하여 IMF 이후 위축된 경비업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 후 2001, 2002, 2005년 3회의 개정을 하였다.

한편 용역경비업법이 5차(1995.12.31) 개정·공포되면서 합법적인 민간경비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5차 개정 이유는 민간경비업을 경비업의 한 분야로 흡수하고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경비지도사 제도를 신설하는데 있었다. 이 법이 공포되면서 5개 업체로 출발한 민간경비업체는 2007년 현재 2,671개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2002년도에 173개에서 무려, 2,500개 정도가 더 생겨났다.

하지만 국내의 부실한 업체들이 난립함으로써, 가격덤핑행위, 연예인 무료 서비스관행 등 부작용을 낳고 있기도 하다. 덤핑행위는 결국 민간경비원의 임금을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민간경비의 서비스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경비업법령에 평가와 민간경비의 법·제도적 적정성에 대한 인식을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비업법의 평가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 경비업법령에 대한 평가

구 분	인원(명)	빈도(%)	
경비업법령에 대한 평가	매우 문제점이 많다	57	27.4
	문제점이 많은 편이다	97	46.6
	그저 그렇다	24	11.5
	합리적이다	15	7.2
	매우 합리적이다	15	7.2

현행 경비업법령에 문제점이 ‘많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46.6%(9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문제점이 많다’가 27.4%(57명)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그저 그렇다’가 11.5%(24명), ‘합리적이다’가 7.2%, ‘매우 합리적

이다'가 7.2%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가 14.4%에 불과한 반면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은 전체의 74%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의 성격상 주로 경비업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규제위주의 법령이기 때문에 경비업체로는 불편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 경비업체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경비업법령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교육문제와 경비원의 배치 문제, 경비지도사 배치 문제 등에 문제점이 있으며 경비원 신입교육을 업체위탁 교육방식에서 경찰청 지정교육기관 교육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불만과 불편한 심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교육기관 교육방식으로 인하여 비용과 시간의 손실에 대하여 경영상의 애로를 토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경비원, 특수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교육과목과 시간문제, 신고 절차와 방법의 문제 등이 있다.

민간경비업무의 법·제도적 적정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표 3-2>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표 3-2> 민간경비의 법·제도적 적정성

구 분	아주 약하다	조금 약하다	보통이다	조금 엄격하다	매우 엄격하다	합 계
민간경비 종사자	4(18)	29(58)	4(18)	3(6)	0(0)	90(100)
근무 연수	무응답	0(0)	1(100)	0(0)	0(0)	1(100)
	1년 미만	5(23.08)	8(46.15)	5(23.08)	3(7.69)	23(100)
	1~3년	7(12.50)	21(70.83)	6(16.67)	0(0)	34(100)
	3~5년	6(33.33)	10(66.67)	0(0)	0(0)	16(100)
	5~10년	4(25)	6(50)	4(25)	0(0)	14(100)
	10년 이상	0(0)	0(0)	0(0)	2(100)	2(100)
$X^2 = 41.990$ df = 15 Prob = 01						
경찰관	11(20)	25(54.55)	13(23.64)	1(1.82)	0(0)	50(100)
계급	경장 이하	6(31.82)	8(45.45)	3(22.73)	0(0)	17(100)
	경사/경위	1(4)	12(68)	6(24)	1(4)	20(100)
	경감/경정	2(37.50)	1(37.50)	0(0)	0(0)	3(100)
$X^2 = 8.766$ df = 6 Prob = 0.187						
근무 년한	3년 미만	0 (0)	3 (100)	0(0)	0(0)	3(100)
	3~5년	2 (50)	2 (50)	0(0)	0(0)	4(100)
	5~8년	1 (16.67)	3 (50)	2(33.33)	0(0)	6(100)
	8~10년	1 (12.50)	5 (62.50)	2(25)	0(0)	8(100)
	10년 이상	7 (20.59)	17 (50)	9(26.47)	1(2.94)	34(100)
$X^2 = 6.693$ df = 12 Prob = 0.877						
$X^2 = 5097$ df = 8 Prob = 01						

민간경비종사자들 사이에서는 근무 연수에 따라서도 견해를 달리함을 살펴볼 수 있다. 근무 연수 1년 미만의 민간경비종사자의 경우 69.23%가 약하다(‘조금 약하다’ 46.15%, ‘아주 약하다’ 23.08%)고 답했다. 근무 연수 1~3년의 민간경비종사자는 83.33%(조금 70.83%, 아주 12.5%)가 약하다는 견해를 보였고, 3~5년 인 민간경비종사자는 100%(조금 66.67%, 아주 33.33%)가 약하다고 답했다. 거의 대다수의 민간경비종사자들이 현행 자격요건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찰관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조금 약하거나(54.55%), 아주 약하다(20%)고 응답함으로써 허가요건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2. 경비업체에 관한 평가 분석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민간경비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및 만족도에 대한 인식 분석의 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 3-3> 민간경비업에 대한 만족도

구 분		인원(명)	빈도(%)
경비업 선택동기	적성에 맞기 때문에	24	26.7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15	16.3
	수입이 높다고 해서	7	8.1
	다른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21	23.3
	기타	23	25.9
월소득정도	매우적다	19	21.1
	적다	28	31.2
	보통이다	24	26.9
	만족한다	12	12.9
	매우 만족한다	7	7.6
직업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19	21.4
	불만족한다	35	39.2
	그저 그렇다	29	32.2
	만족한다	7	8.2
	매우 만족한다	0	0.0
직업 불만족 이유	저소득	14	15.3
	직업의 부정적 평가	17	18.7
	조직관리의 어려움	9	9.6
	경쟁업체 난립	29	32.2
	기타	12	12.9
	무응답	9	10.0

민간경비업을 선택한 동기를 보면 적성에 맞기 때문이 전체 응답자의 26.7%(2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23.3%(21명),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16.3%(1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른 마땅한 직업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부정적 생각이 전체의 23.3%(21명)인 반면 적성에 맞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어서 선택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전체의 43%(39명)이므로 입직 동기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민간경비업의 직업만족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그저 그렇다’가 32.2%(29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하다’는 39.2%(35명), ‘매우 불만족하다’ 21.4%(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족한다’ 8.2%(7명)와 ‘매우 만족한다’ 0%(0명)는 응답은 전체의 8.2%로 나타나 현재의 민간경비업이라는 직업에 대해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만족한 경우에 그 이유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경쟁업체의 난립때문이라’는 응답이 32.2%(2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의 부정적 평가’ 18.7%(17명), ‘저소득 때문’ 15.3%(14명), ‘조직 관리의 어려움’ 9.6%(9명)에 불과하였다. 경비업계의 묵은 과제중의 하나가 바로 무분별한 경쟁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저가 입찰, 덤핑입찰 등의 문제이다.

최근 경비업체 수가 2천671개에 이르고 경비원도 12만7620 명을 넘어선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영세한 업체의 난립은 결국 덤핑계약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경비원은 낮은 보수와 후생복지의 취약 등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 업무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방안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시급한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결과도 이를 반영하듯이 경쟁업체의 난립이 불만족의 요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2.2%(29명)를 차지할 정도로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비업체를 통한 월소득에 대해서는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가 전체의 20.5%에 불과할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경비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결과를 보면 <표 3-4>와 같다.



<표 3-4> 민간경비업에 대한 평가

구 분	인원(명)	빈도(%)	
경비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매우 부정적일 것이다	0	0
	부정적일 것이다	42	31.3
	그저 그럴 것이다	66	49.3
	긍정적일 것이다	25	18.7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1	0.7
시민들의 부정적 평가 이유	적은 수입	14	10.4
	낮은 사회적 지위	46	34.3
	부정적 평가	11	8.2
	사회적 역할의 부족	14	10.4
	사회적 인식부족	41	30.6
	무응답	8	6.0
경비업계 평가	매우 문제점이 많다	42	31.3
	문제점이 많은 편이다	82	61.2
	그저 그렇다	9	6.7
	합리적이다	0	0
	매우 합리적이다	1	1.7
경비업 입직 권유	절대 반대하겠다	14	10.4
	반대하겠다	90	67.2
	잘 모르겠다	17	2.7
	찬성하겠다	10	7.5
	적극 찬성하겠다	3	2.2

경비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에 대한 인식은 ‘그저 그럴 것이다’가 49.3%(66명)로 과반수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일 것이다’ 31.3%(42명), ‘긍정적일 것이다’ 18.7%(25명),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가 0.7%(1명)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비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에 대한 인식은 전체 응답 중에서 19.4%(26명)만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어 부정적인 시각을 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업에 대해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낮은 사회적 지위’ 때문이라는 의견이 34.3%(4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인식부족’ 30.6%(41명), 적은 수입과 사회적 역할의 부족 때문이 각각 10.4%(14명)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지위, 사회적 인식 부족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비업의 직업평가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비업계의 평가에 대한 인식분석의 결과를 보면 문제점이 많은 편이다가 61.2%(82명)로 가장 높게 나타으며, ‘매우 문제점이 많다’ 31.3%(42명), ‘그저 그렇다’

6.7%(9명), 긍정적인 평가는 1.7%(1명)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의 사회적 평가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 내부적으로도 영세업체의 난립 등으로 기업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 가까운 사람이 경비업을 하겠다고 상의하는 경우에는 반대하겠다고 67.2%(9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절대 반대하겠다’ 10.4%(14명), ‘찬성하겠다’ 7.5%(10명), ‘적극 찬성하겠다’ 2.2%(3명)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의 경비업에 대한 입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77.6%(104명)인 반면 찬성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은 9.7%(13명)에 불과하였다.

### 3. 경비협회에 관한 평가 분석

한국경비협회의 정책 및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분석의 결과는 <표 3-5>와 같다.

<표 3-5> 민간경비업에 대한 만족도

구분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통이다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무응답
협회의 관리 및 운영문제	인원(명%)	22(6.7%)	44(23.1%)	84(53.7)	26(10.4%)	16(3%)	16(3%)
경비원 교육 및 훈련문제	인원(명%)	31(14.9%)	62(29.8%)	57(27.4%)	26(12.5%)	15(7.2%)	17(8.1%)
공제사업	인원(명%)	19(9.1%)	46(22.1%)	71(34.1%)	39(18.7%)	15(7.2%)	18(8.6%)
감독기관과의 관계	인원(명%)	26(12.5%)	75(36%)	55(26.4%)	19(9.1%)	15(7.2%)	18(8.6%)
회원사의 권익보호	인원(명%)	32(15.3%)	56(26.9%)	67(32.2%)	20(9.6%)	15(7.2%)	18(8.6%)
업무 및 정책 협조정도	인원(명%)	15(7.2%)	14(6.7%)	42(20.1%)	106(50.9%)	31(14.9%)	0(0%)

협회의 관리 및 운영문제에 대한 평가를 보면 ‘보통이다’가 53.7%(8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이다’ 23.1%(44명), ‘매우 부정적이다’ 6.7%(22명), ‘긍정적이다’ 10.4%(26명), ‘매우 긍정적이다’ 3.0%(16명)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긍정적인 평가가 13.4%(42명)에 불과하여 협회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아쉬움과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협회의 경비원 교육훈련 정책과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가 29.8%(62명)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보통이다’가 27.4%(57명), ‘매우 부정적이다’가 14.9%(31명), ‘긍정적이다’가 12.5%(26명), 매우 긍정적이다가 7.2%(15명)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44.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긍정적인 의견은 19.7%에 불과하였다. 공제사업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보통

이다가 34.1%(7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이다’ 22.1%(46명), ‘긍정적이다’ 18.7%(39명), ‘매우 부정적이다’ 9.1%(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정적인 평가도 31.2%를 차지하고 있어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협회와 감독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36.0%(7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26.4%(55명), ‘매우 부정적이다’ 12.5%(2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근 교육훈련정책의 변경과 협회교육기관 지정문제 등으로 양 기관이 불편한 점을 감안한 의견이라고 보인다.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32.2%(6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이다’ 26.9%(56명), ‘매우 부정적이다’ 15.3%(32명), ‘긍정적이다’ 9.6%(20명), ‘매우 긍정적이다’ 7.2%(15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비협회가 회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임을 감안할 때 회원사의 권익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42.2%인 반면 긍정적인 의견은 16.8%에 그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회원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협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결국 협회 회원의 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협회의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보통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회원사들의 협회 정책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의 업무 및 정책에 대한 협조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협조하고 있다가 50.9%(106명),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가 14.9%(31명), 그저 그렇다가 20.1%(42명)로 나타났다. 전체 중에서 65.8%가 협조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정책에 대한 참여도가 충성도는 매우 높은 반면 협회가 이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IV. 논의 및 방안

### 1. 민간경비 관련법의 개선

조사결과 현행 경비업법령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의 성격상 주로 경비업자나 경비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규제위주의 법령이기 때문에 경비업 관계자에게는 불편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 경비업에 관계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경비업법령의 몇 가지 개선을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사항의 신고처 문제이다. 경비업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경비업의 허

가를 받은 법인은 신고사항이 발생하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신고할 사항에 발생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접수기관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교육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직무교육은 경비업자가 소속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4시간 이상,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비업체 매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형식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복수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각 업무별 교육이 실시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일반 및 특수경비원의 신입교육 이론과목 중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은 소정의 시간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이중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청원경찰법은 경비원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과목이므로 과목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대상자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이다. 이 경비업무들은 나름대로의 업무성격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세분화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목은 이러한 업무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안황권a, 2007: 52-53).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의 경호관련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학생들도 민간경비업체의 현장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신입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신입교육 28시간 또는 88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일반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경호관련학과에서 시큐리티 관련 55학점(770시간)을 취득한 경호관련 대학 졸업생은 신입교육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경비지도사 시험 및 교육의 문제점이다. 우선 법학개론의 경우 민간경비와 관련 없는 법학 교수들이 출제하고 있어, 방대한 법학개론 내용 중에서도 민간경비 직무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다수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2차 시험과목에 경비업법이 있으므로 법학개론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경비지도사는 5개 경비업무에 선임·배치될 뿐 청원경찰하고는 무관하다. 따라서 경비업법에 청원경찰법이 포함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경비지도사 2차과목 중 하나는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에서 택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업에 선임·배치되므로 이와 관련된 과목을 검정해야 한다.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이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과목을 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호학의 경우는 광의로 해석하면 1차과목인 민간경비론과 중복되는 것이고, 협의로 경호학=신변보호로 해석하는 경우는 4개 경비업무 중에서 신변보호에 치우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행 경비지도사는 필기시험만으로 평가한 후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몇 개월의 단순 암기를 잘하여 선발되면 실제 현장에 배치되어 적절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경비지도사의 직무 중 현장실기지도가 필요한 내용이므로 경비지도사 교육을 실기위주의 교육과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안황권, 2007a: 54-57).

현행 경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의 규정이 없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시큐리티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즉 치안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경비업 관련 법령의 변경,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계경비장비의 변화 등이다. 따라서 소정의 기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정의행위 금지에 대한 문제이다. 경비업법 제15조제3항에서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정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특수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별도의 기구를 두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극히 제한된 부분에만 사용주와 협상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는 방안(김두현, 2007: 62)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경비원 배치의 문제이다. 법 제18조제2항에서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치신고의 경우는 ①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 경우-특수경비원, ②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 경우-시설경비업무 중 해당시설 배치된 일반경비원과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③ 배치한 후 3일 이내 신고하는 경우-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할 때이다.

이 중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한 후 3일 이내에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일선 현장에서 불성실한 경비원들이 장단기 결근을 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배치 후 5~7일 이내에 배치신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가정폭력, 스토키, 학생폭력 등으로 인하여 경비원이 즉각 또는 빠른 시간내 출동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법18조제2항 제2호 신변보호의 경우에 24시간 전 배치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1~2명의 소수의 신변보호 경비원이 배치되는 경우는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여섯째, 민간조사업의 추가문제이다. 민간조사업무가 경비업의 업무와 유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민간조사업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민간조사요원들의 75%이상이 경찰·군·경비회사 등의 출신이며, 총 민간조사요원 중 약25%가 보디가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두현, 2007: 66). 이와 같이 업무의 성격

이 유사할 뿐 아니라 민간조사업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은 유관단체들의 반대로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안황권, 2007a: 59).

## 2. 민간경비업체의 합리적 운영

민간경비 관계자들의 경비업을 선택한 입직동기는 긍정적이고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경비업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크게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이유는 경쟁업체의 난립, 직업의 부정적 평가, 저소득 등으로 나타났다. 바로 무분별한 경쟁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저가 입찰, 덤핑입찰 등이 경비업계의 목은 과제인 것이 입증되었다.

덤핑문제는 영업전략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정 경비대상물건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기 위해서 적정가격을 현저하게 낮춰서 입찰하여 낙찰 받는 것이다. 경비대금을 저가로 낙찰하게 되면 그 결과 경비원은 낮은 보수와 후생복지의 취약 등으로 이직이 잦아 업무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안성조·안황권, 2005: 156).

덤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비협회의 윤리위원회의 구성하여 표준가격시산표를 제정하고 극단적으로 싸게 수주한 업체에 대해서 그 상황설명서를 협회에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경비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낮은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지위, 사회적 인식부족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경비업의 직업평가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경비업체나 한 사람의 경비원이 실수를 하여 매스컴에 등장하는 경우 그 업체에 대한 신뢰의 저하뿐 아니라 경비업계 전체가 매도되고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경비업자계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 3. 한국경비협회의 능력 제고

한국경비협회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원사의 권익보호나 협회의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보통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회원사들의 협회 정책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경비협회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뢰를 높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협회는 회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므로 회원들의 불만은 바로 불신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협회의 세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협회의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보통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회원사들의 협회 정책에 대한 협조 및 충성도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경비협회가 중심이 되어 공·사경비 간의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치안공동생산과 방법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하지만, 관공민비사상과 경비업체에 대한 폄하 등의 분위기로 볼 때 민간경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능력을 과시하고 저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업무협조가 안되는 이유는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부족, 법률의 제약과 규제, 민간경비의 전문지식 부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민간경비가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경비공동위원회를 경찰과의 치안 공동생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경비협회가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장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구성요인을 진단한 후 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현행 경비업법령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규제위주의 법령 때문에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교육문제, 경비원의 배치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민간경비 관계자들의 경비업을 선택한 입직동기는 긍정적이고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경비업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크게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이유는 경쟁업체의 난립, 직업의 부정적 평가, 저소득 등으로 나타났다. 바로 무분별한 경쟁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저가 입찰, 덩핑입찰 등이

경비업계의 묶은 과제인 것이 입증되었다.

셋째, 한국경비협회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원사의 권익보호나 협회의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보통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회원사들의 협회 정책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의 함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의 구성요소를 관련법, 경비업체, 경비협회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고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민간경비의 기본인 관련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신고사항의 신고처 개선, 경비원 경비지도사의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과목, 직무교육시간, 교육내용, 경비지도사 시험과목과 교육내용 개선, 경비지도사 응시연령 상향조정,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신설, 특수경비원의 사용주와 협상기구 신설, 합리적인 경비원 배치기준 마련, 민간조사업무의 추가 등이 필요하다.

경비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저가 입찰, 덤핑입찰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비협회의 윤리위원회의 구성하여 표준가격시산표를 제정하고 극단적으로 싸게 수주한 업체에 대해서 그 상황설명서를 협회에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비업계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경비협회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 치안공동생산과 방법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하지만, 관존민비사상과 경비업체에 대한 폄하 등의 분위기로 볼 때 민간경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능력을 배양하여 저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한국경비협회가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장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로는 민간경비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지만 세 가지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좀 더 세분하여 천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여 민간경비의 발전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두현(2007).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경비협회 제19차 CEO세미나 자료집』.
- 안성조·안황권(2005). “경비원의 직무환경과 사기 및 이직의사와의 관계”. 『경호경비연구』, 제9호.
- 안황권(2007a).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경기대 대학원 경호안전학과 제7회 세미나 자료집』.
- \_\_\_\_\_ (2007b). “경호안전 전공자의 진로비전”. 『경기대 체육대학 제1회 세미나 자료집』.
- 허경미(1998). “민간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연구”, 『치안정책연구』.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ABSTRACT

### **In about Solution for Improvement in the Private Security Sector research**

Lee, Young-Oh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a solution for the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according to the change in criminal environment. The main cause of crime can be found in the anti-functional dimensions including value set disorder, social phenomenon variation, information-based, glob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this environment, the private security sector has dramatically increased in a quantitative viewpoint, but it is insufficient in a qualitative viewpoint. This paper recognized this problem and demonstrates a solution for improvement through classifying elements of private security into relevant legislation, education institutions, security companies and security associations.

The analysis result is as follows:

First, motivation and satisfaction rate of escort and security related major has shown to be high. However, respondents evaluated the guard educational institution negatively.

Second, the motivation of entering into the private security sector for internal staffs has shown to be positive and sound. However, the job satisfaction rate has shown to be low due to excessive competition, negative perception of occupation and low earning.

Third, respondents gave an average mark to the Security Association's management and operation. In addition, the mutual-aid project received the same mark. Negative feedbacks were given to the protection of member's interest and to association operation and policy, while positive feedbacks were given to the degree of member's cooperation towards association policies.

Key Words : Security, Korean security association, Private security ethical association,  
Private security, Legislation of private security